

##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제안\*

### 초록

- ▶ 이 연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공공 부문과 민간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나의 법률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서비스 질 관리 요소 중 공공과 민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과 각 특성을 인정한 별도 기준 고려가 가능한 부분을 구별해 실행가능한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함.

### 1 연구 배경과 목적

- ▶ 연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질 관리를 목적으로 2025년 4월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어 2026년 4.23 시행됨. 개정 법률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 부여, 민간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제임.
- ▶ 법률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에서 아이돌봄을 알선·연계하는 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임. 이미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간 기관을 등록시키는 법조항이 신설된 만큼 그 취지를 이해하고, 개정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 부문과 민간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나의 법률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서비스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기반으로 법률의 내용을 서비스 질 관리 요소 중 공공과 민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과 각 특성을 인정한 별도 기준 고려가 가능한 부분을 구별해 실행가능한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해 줄 필요가 있음.

\* 이 이슈페이퍼는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김소영·정가원·구미영·권소영·구혜령(2025).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방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의 의미와 특징

- ▶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의 핵심 내용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봄사’라는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시행임.
- ▶ 법률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돌봄사라는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임.

〈표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규 제도의 특징 개요

|       | 공공    | 민간           |
|-------|-------|--------------|
| 기관    | 지정제   | 등록제          |
| 돌봄 인력 | 아이돌봄사 | 아이돌봄사/ 육아도우미 |

- ▶ 제공기관과 돌봄인력에 대한 이원화된 기준이 적용된 배경에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역할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집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 목적이 크다 하겠음.
-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관리 가이드 마련) 민간 시장의 특성에 기반한 등록제 도입은 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의미보다는 「아이돌봄 지원법」의 본래 목적을 고려해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관리 책무를 규정한 것임. 특히,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3; 김소영 외, 2013; 허민숙, 2018; 김소영 외, 2022; 김아름 외, 2022)로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 (공공 및 민간 영역 돌봄인력의 공통 요건 및 보호장치 마련)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아이돌봄사’라는 국가자격이 도입되었지만 민간 시장에는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돌봄 인력의 자격 요건이 이원화됨. 이는 기존 민간 돌봄시장의 구조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돌봄서비스 공급 위축을 방지하는 동시에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격 요건은 이원화되었지만 개정 법에서는 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요건을 마련하고, 돌봄인력의 안전 보호 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표 2〉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돌봄인력의 자격 및 처우 비교

| 돌봄 인력<br>관련 사항      | 공공 지정기관                            | 민간 등록기관                                                                                                                    |
|---------------------|------------------------------------|----------------------------------------------------------------------------------------------------------------------------|
| 활동 조건               | 아이돌봄사(결격사유 확인 필수)                  | 결격사유 없는 자                                                                                                                  |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필수                                 | 필수                                                                                                                         |
| 건강진단                | 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사) 필수</li> <li>• (육아도우미) 제한적 사항에 필수 적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li> </ul> |
| 상해 보상               |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br>4대 보험 미가입자 상해보험 가입 | 업체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 표준근로계약서             | 의무                                 | 고용 시 의무                                                                                                                    |
| 상당                  | 자율                                 | 자율                                                                                                                         |

### 3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의 주요 이슈

-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주요 이슈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①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관련 이슈, ② 기관과 인력에 대한 관리 이원화에 따른 기존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사항, ③ 제도 운영 시 고려사항

〈표 3〉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주요 이슈 요약

| 하위법령 정비<br>주요 이슈                        | 사전 검토가 필요한 세부 내용                                                                                                                                                                                                                                                                                                                                                                                                                                                                                                                                                                                   | 해당 법조항                                                                   |
|-----------------------------------------|----------------------------------------------------------------------------------------------------------------------------------------------------------------------------------------------------------------------------------------------------------------------------------------------------------------------------------------------------------------------------------------------------------------------------------------------------------------------------------------------------------------------------------------------------------------------------------------------------|--------------------------------------------------------------------------|
|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관련                      |                                                                                                                                                                                                                                                                                                                                                                                                                                                                                                                                                                                                    |                                                                          |
| 민간<br>아이돌봄서비스기관의<br>등록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명시된 등록, 운영 관련 기준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등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등록 사항(기본정보), 등록 절차, 운영 기준, 손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책임 범위,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절차 등</li> </ul> </li> <li>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등록제의 운영 방향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여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민간 기관의 규모를 파악할 것인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와 서비스 운영 역량이 있는 기관을 등록시키도록 기준을 정할 것인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li> </ul> </li> <li>등록기관의 기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범위, 제공하는 정보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li> <li>위의 세부사항 중 등록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제시할 필요</li> </ul> |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br>기관 등록 등)                                             |
| 범죄경력 조회 등<br>결격사유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과 책임 주체 명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자와 활동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과 책임 주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제시</li> </ul> </li> </ul>                                                                                                                                                                                                                                                                                                                                                                      |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br>범죄경력 조회)                                          |
| 기관과 인력에 대한 관리 이원화에 따른 기존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사항 |                                                                                                                                                                                                                                                                                                                                                                                                                                                                                                                                                                                                    |                                                                          |
| 보수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기관)에 보수교육 일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봄사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보수교육 이수 필수임</li> <li>보수교육의 일부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기관)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됨.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보수교육의 공통 내용 또는 필수 내용을 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li> </ul> </li> </ul>                                                                                                                                                                                                                                                        | 제10조(보수교육)                                                               |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br>정보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등록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를 지정기관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체 기본정보 외에 이용 비용, 이용 표준계약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인력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의 평가 결과 등의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li> </ul> </li> </ul>                                                                                                                                                                                                                                                                                                      |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br>서비스 안내 등)                                           |
| 서비스제공기관<br>시정명령, 등록 취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등록기관과 지정기관에게 시정명령, 지정, 등록 취소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 행위의 세부 항목을 민간 등록기관에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li> </ul> </li> </ul>                                                                                                                                                                                                                                                                                                                                                                            |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br>등록 취소 등)                                            |
| 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br>및 평가, 만족도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등록기관의 평가, 만족도 조사의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관 평가 결과 공개, 만족도 조사가 의무이행 사항은 아님.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해당 관리 사항을 민간 등록기관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li> </ul> </li> </ul>                                                                                                                                                                                                                                                                                                                                                     |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br>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평가)<br>제1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br>기관 만족도 조사) |
| 제도 운영 시 고려사항                            |                                                                                                                                                                                                                                                                                                                                                                                                                                                                                                                                                                                                    |                                                                          |
|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의<br>임무, 아이돌봄사 직무<br>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에 규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를 민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에도 이행 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고려 필요</li> <li>민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일하는 아이돌봄사의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아이돌봄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하기 위한 조치 검토</li> </ul>                                                                                                                                                                                                                                                                                                                                                                                                 | 제13조(아이돌봄<br>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br>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
| 표준 이용계약서<br>관련(이용자-돌봄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등록기관 이용자와 돌봄인력(아이돌봄사, 육아도우미) 간에 표준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표준화 가이드 제공에 대한 검토 필요</li> </ul>                                                                                                                                                                                                                                                                                                                                                                                                                                                                  | -                                                                        |

## 4 「직업안정법」과의 관계와 쟁점

-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민간 기관 중 상당 수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김아름 외, 2022)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 이에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을 민간 기관에 적용함에 있어 「직업안정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직업안정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이돌봄 지원법」하위법령 정비에 반영해야 할지 검토함.
- ▶ (등록기관이 돌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의 문제)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면(또는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근로자파견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등록기관이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의 문제)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시행규칙에서 지정기관에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개정 법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등록기관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요구한다면 노동 제공인력과 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자격을 상실할 위험성이 존재함. 같은 이유로 아이돌봄사 등의 고용에 대해 등록기관이 상담하고 고용을 “처리”할 것을 운영기준에 포함시킨다면, 「직업안정법」 등과 충돌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등록기관의 등록기준과 직업안정법) 지정기관과 등록기관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데,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지정기관에 비해 등록기관의 등록 기준이 더 엄격하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등록할 수 있으면서, 법인일 때에는 설립목적, 납입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설 기준 및 사업자의 자격 요건 등도 규정하고 있음.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상 등록기관은 아이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다른 정책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안정법」의 등록기준 준용을 고려해볼 여지 있음. 다만,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의 등록 기준은 등록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기관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 강화와 연동해 등록 및 운영기준을 조정하는 접근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손해배상책임) 「직업안정법」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이용자와의 소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용자 또는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적 근거인데 반해 「아이돌봄 지원법」은 생명, 신체 관련한 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다 제도화된 방식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한편,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과정에서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예치금 등의 선택지를 허용하는 반면에 「아이돌봄 지원법」은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등록기관이 가입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실제로 개발, 운용되는지도 정책적 관건임.

## 5 결론: 아이돌봄 지원법 하위 법령 정비 방향

### 1) 제도 도입에 따른 신설 규정 마련

-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
  - 기관의 성격: 현재 개인사업자가 다수인 민간 시장의 특성을 볼 때,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영유아를 집에서 돌보는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제공기관의 성격과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물적 요건을 일정부분 갖추는 것은 중요할 것임. 다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의 현황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데이터가 없는 현재의 제약과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해소 등을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접근에서 시작해 민간 등록기관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여부 등 정책의 확장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해가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시설 기준: 민간 기관 대부분이 돌봄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알선 또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관리인력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최소한의 기준을 부여함.
  - 인력 기준: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기관의 장과 고용된 사무인력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기관들의 자율적 운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과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두도록 함. 이 때, 등록기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특히 돌봄인력에 대한 손해배상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해 유사 서비스의 사례 등을 참고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본문 참조).

## 2) 기존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사항

### ▶ 민간 육아도우미 보수교육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들도 점차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공통 교육훈련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이 안전하게 아동을 돌보기 위한 최소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등록 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함. 그 일환으로 호출형 근로를 하는 돌봄인력의 특성을 고려해 그들의 교육훈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 기관 서비스 내용과 이용자 민원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 등록기관에 보수교육 일부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정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 민간 등록기관 정보 제공(공개) 범위

- 민간 등록기관의 운영 현황과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요소임. 특히,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 기준과 관리감독을 시행할 경우 투명한 정보 공개는 더욱 중요할 것임.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기관의 기본 정보와 서비스 내용, 돌봄인력과 관련한 세부 사항으로 구성됨. 세부 요소 중 기관 평가 결과, 이용 비용과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돌봄인력의 자격정지 및 취소이력 등의 정보 제공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하므로,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민간 등록기관 시정명령, 등록 취소

-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에 따르면 민간 등록기관이 등록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음.
-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지정 기관과 민간 등록기관에 대한 구분 없이 위에 제시된 지정 또는 등록 취소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기관의 법적 지위와 정부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9가지 사유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보호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를 민간 등록기관에 적용하기에는 법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한 점이 존재함. 이에 해당 위반 사유를 민간 등록기관에는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법 조항에서 재지정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사유별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지정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민간 등록기관에 적용할 경우 유관 법률에 비해 다소 높은 기준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사유에 한해 재지정 제한기간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 민간 등록기관 평가, 만족도 조사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등록기관의 평가와 기관 및 인력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질 관리의 중요한 요소임. 다만, 민간 등록기관이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관의 자율성 부여 정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음. 기관이 자율 등록하며, 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는 경우 민간 등록기관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임. 돌봄인력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역시 민간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비용 지원을 전제하지 않는 경우 표준화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3.5.15.). 베이비시터 관리 체계 개선.  
 김소영·장혜경·김영란·선보영·조윤주(2013). 민간 베이비시터 운영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소영·최인희·권소영·박세경(202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아름·유해미·이정원·윤지연(2022). 민간 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방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허민숙(2018).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 관리를 위한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제1454호. 국회입법조사처.  
 「아이돌봄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_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_지원법)(검색일: 2025.7.1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_지원법\\_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_지원법_시행규칙)(검색일: 2025.7.14.)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검색일: 2025.12.3.)

---

**주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

**관계부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